4.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O 제출일자 : 2022년 9월 14일

O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기획조정실장)

O 회부일자 : 2022년 9월 15일

○ 상정일자 : ① 제29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2년 9월 21일), 심사유보

② 제29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2년 10월 17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 제안이유

○ 시정 주요 정책방향 설정과 현안사업 해결 등에 관한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O 시정특별고문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시정특별고문 위촉,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5조).
- 이 회의, 활동지원 및 비밀누설금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8조).
- 고문활동을 통해 알게 된 주요 정책에 대한 비밀누설금지(안 제9조).
- O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O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안 부칙).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정미정)

O 이 제정조례안은

► 시정 주요 정책방향 설정과 주요 현안 사업 해결 등 당면한 시정 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역량을 갖추고 전문분야 경험이 있는 시정특별고문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O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 이 제정조례안은 본칙 10개조와 부칙 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음.

- ▶ 안 제2조에서는 시정특별고문 설치 근거와 기능에 대해 명시 하였음.
- ► 안 제3조에서는 시정특별고문의 위촉 자격을 명시하였음. 다만, 인원수에 대한 제한을 따로 두지 않았으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상한 인원을 정할 필요도 있겠음.

※ 시정특별고문 위촉 자격(안 제3조 각호)

- 1. 국내외 저명한 인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 2. 시정 주요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그 외 국정 및 시정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 ► 안 제4조는 시정특별고문의 임기와 연임 규정을 마련하였음. (* 임기는 3년 이내, 1년 단위로 연임 가능)
- ▶ 안 제5조에서는 개인신상의 문제,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 업무태만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 ▶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시정특별고문 회의 운영 방법, 고문 활동에 따른 공무원 등의 자료 협조 의무 등을 규정하여, 활동과 관련한 실효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 ▶ 안 제8조에서는 시정특별고문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알게 된 주요 정책에 관한 사실에 대해 누설하거나, 이를 활용한 사익 추구 행위를 금하였으며,
- ▶ 안 제9조에서는 시정특별고문 활동에 따른 회의 참석 수당, 여비, 활동보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보상금 편성 기준

*보상금은 반드시 합리적 기준(산출기초)에 의해 편성하고, 포괄적으로 편성하지 않도록 함

(예산과목) 기타보상금(301-04)

□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물품

다만, 제정조례안은 시정고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활동보상금에 대한 지원 근거만 명시하였을 뿐, 지원액 기준, 자문활동에 대한 내역 검증 등 수당 지급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을 조례에 정하지 않고 시행규칙 등에 위임한 것으로 보임.

이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인 타시·도4)의 경우와 비교해 제도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다소 떨어질 우려가 있겠음.

▶ 안 부칙에서는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였음.

○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 이번 제정안 제출은 주요 시정추진과정에서 역량 있고 전문적인 자문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도 도입 취지는 충분히 인정되나, 향후 제도운영에 있어 투명성 제고와 제도 실효성 유지에 각별히 노력해야겠음.

4) 정책고문 유사 제도 운영 사례

● 수당지급 기준을 조례에 정하여 운영중인 광역단체 例

「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제5조(활동지원) 정책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책자문관이 자료 및 정보수집, 민원상담, 자문 검토 및 결과 보고 등을 수행한 시간을 활동 시간으로 산정하여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월 2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 : 100만원 이내

-월 50시간 이상 : 150만원 이내

❷ 자문활동내역을 관리하도록 조례에 규정한 광역단체 例

「부산광역시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 운영조례」제7조(자문실적부 비치 및 관리·점검) ~생략~

4. 질의 및 답변요지

제295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9.21.) / 심사유보

| | ,,,,,,,,,,,,,,,,,,,,,,,,,,,,,,,,,,,,,,, |
|--|---|
| 질 의 | 답 변 |
| ○ 민선8기 출범이후 위원회는 폐지하고, 고액 시정고문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있는데 의견은? | ○ 위원회 폐지는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며, 시정 고문 제도는 지역출신의 명망가의 지식 또는 정치적 경험 등의 자산을 시정 발전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
| ○ 다른 시·도에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있나요? ○ 다른 시·도에는 실적을 보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 같은데, 우리시도 이런 | ○ 13개 시·도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시행규칙에 정해서 할 계획이며, 자문의 난이도, 실적 등에 따라서 투명하게 |
|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 입법예고 과정에서 300만원이내 지급 하도록 규정하였다가, 최종 제출안에는 빠져있는데 이유는? | 집행하겠음. ○ 입법예고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청취해서 금액을 제한하는 것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위임하게 되었음. |
| ○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는 다른 지자체에서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따로 파악한 것이 있나요? | ○ 전남도에서는 월 500만원 이내로 운영 하고 있고, 제주도의 경우는 자문회당 100만원 내로 정하는 등, 지역마다 자문 횟수 등 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
| ○ 시정고문으로 위촉될 분들이 꼭 활동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여러방법 으로 시정에 도움되는 일을 하실것 으로 생각되는데? | ○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으며, 직위를 부여하게 되면, 대외적으로 활동하실 때 훨씬 용이한 측면이 있음. |
| ○ 시정고문의 수, 활동보상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자칫 이 제도를 임의대로 운용할 우려가 있으며, 구체성이부족해 보임. | ○ 최소한도로 운용할 예정이며, 예산편성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의회의 통제를 충분히 받도록 할 것임. |

제2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10.17.)

의 답 질 벼 ○ 시행규칙안에 보면 월 100만원의 범위 ○ 활동실적에 따라 월 100만원 이내 지급 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시정에 되도록 규정되어있고, 성과급 개념이 큰 기여를 한 분에게 월 단위의 아니고 월 단위 활동 경비 보전 성격 한도액 정해서 활동보상금을 지급하는 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람. 것보다 예를 들면 연간 단위로 1,200 만원 한도 내로 한다던지 해서 탄력적 으로 운용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 되는데 의견은? ○ 제정안 제9조의 수당지급근거에 회의 ○ 회의 참석수당과 활동보상금 지급이 참석수당, 여비, 활동보상금에 대해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음. 규정되어 있는데, 이중 회의참석수당이 활동보상금에 포함되어야 될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회의참석수당 규정은 불필요해 보이는데? ○ 시정고문의 수, 수당금액은 중요하지 ○ 네. 유념해서 잘 운용하도록 하겠음. 않다고 생각됨. 제도를 잘 운용해서 여러 우려를 불식하고,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시에 위촉된 고문이나 위원들을 대상 ○ 확인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지만, 투자 으로 성과에 대해 시상이나 포상이 유치와 관련해서 그런 제도가 있는 것 되는 부분은 있는지? 월 단위 활동 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 확인해 보겠으며, 보상금을 주는 것보다 큰 성과가 있을 위원님 의견을 잘 참고하겠음. 때 보상을 확실히 해주는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됨.

5. 토론 요지

○ 위원회 참석수당과 활동보상금에 대한 중복지급 우려가 있어, 조례안 제9조 중 위원회 참석수당 부분의 삭제가 필요해 보임.

6. 수정안 요지

O 없 음

7. 심사결과

O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O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O 없 음